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69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서지영·이헌승·김미애

서천호 • 윤상현 • 김대식

박충권 · 김소희 · 정성국

나경원 · 김용태 · 곽규택

이종배 · 이인선 · 신동욱

이철규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을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028년까지 대상 학년과 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으나, 공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할때,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 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과용"을 "그 밖에 교과용"으로, "범위·저작"을 "저작"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 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를 말한다) 및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 책 및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u>다.</u>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		
	용의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디지털교과서를 말한다) 및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		
	용의 서책 및 음반・영상 등		
	의 전자저작물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	<u>③ 그 밖에 교과용저</u>		
•검정 • 인정 • 발행 • 공급 • 선	<u>작</u>		
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_ .		